

2004. 3

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김 제 시

#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04<br>- 21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04. 3.
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## 1. 개정이유

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 기구가 신설되어 아리랑문학관운영및  
관리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아리랑문학관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 “문화공보담당관”을 “벽골제·  
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”으로 함(안 제11조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-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장제16조
-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

##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중 “문화공보담당관”을 “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행   | 개   정   안  |
|---|--|
| <p>제11조(구성) ①~②(생략)</p> <p>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에는 시의원 1명과 <u>문화공보담당관</u>이 되고,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</p> | <p>제11조(구성) 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<br/>-----<br/><u>벽골제 ·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</u>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|